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88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평택고덕 Aab18-2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982호(2016.12.29)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ab18-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ab18-2BL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ab18-2BL

(경기도 평택시 서정동, 장당동, 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)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[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
행복주택 → 공공분양]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